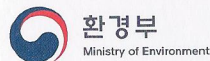


귀하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한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 장외영향평가서란?
- 취급시설 검사란?
- 영업허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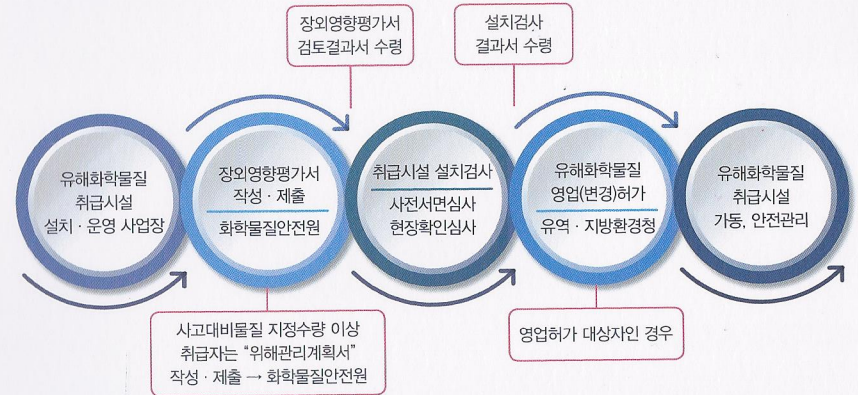
[참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관련 주요 준수사항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고시·훈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흐름도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구분	세부내용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 ⁽¹⁾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
제출시기	신규시설 ⁽²⁾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 기존시설 ⁽³⁾ 경과조치에 따른 유예기간 이내에 제출
작성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위탁
심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

(1)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서 유해화학물질 목록 확인가능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

(2) 신규시설 : 2015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3) 기존시설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시설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의 요건 : 다음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http://nics.me.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취급 담당자 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2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http://edu.kcma.or.kr)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16시간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edunics.me.go.kr)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역(지방)환경청

※ 미 이행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II.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안내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에는 그 유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규정별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고시·훈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수입자

공통사항	(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법 §9) → 화학물질관리협회 (나) 화학물질 통계조사(법 §10) → 관할 환경청(통계청 시스템에 등록), 매2년 (다) 화학사고시 즉시(15분 이내) 신고(법 §43) → 관할 환경청 및 119 등 (라)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법 §50)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법 §13)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추가 준수(법 §40) ②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등에 표시(법 §16) ③ 금지물질 수입금지, 다만, 시약의 경우에만 취급허가 후 수입 가능(법 §18) → 관할 환경청 ④ 수입신고·허가(법 §20) → 관할 환경청 -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 ⑤ 실적보고(법 §49, 시행규칙 §53) → 화학물질관리협회(매년)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참조

■ 화학물질 제조자

공통사항	(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법 §9) → 화학물질관리협회 (나) 화학물질 통계조사(법 §10) → 관할 환경청(통계청 시스템에 등록), 매2년 (다) 화학사고시 즉시(15분 이내) 신고(법 §43) → 관할 환경청 및 119 등 (라)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법 §50)
------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 40개 업종(415종 취급) 대기·수질관련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법 §11) → 관할 환경청(화학물질안전원 조사시스템 등록)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 환경부('19.11월 시행)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법 §13)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추가 준수(법 §40)
-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보관·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법 §16)
- 금지물질 제조금지, 다만, 시약의 경우에만 취급허가 후 제조 가능(법 §18)
→ 관할 환경청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법 §28) → 관할 환경청
- 기술인력 선임(법 §28),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32)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시 도급신고(법 §31)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법 §33)
- 취급시설 안전관리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주요 사항〉
- 개인보호장구 착용(법 §14)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법 §23) → 화학물질안전원(착공 30일전)
-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시설검사 및 안전진단(법 §24) → 검사기관
- 취급시설 등의 점검(법 §26) → 사업장 자체(주1회)
- 취급중단, 휴업·폐업시 신고(법 §34)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법 §41) → 화학물질안전원(매5년)
-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계획의 지역사회 고지(법 §42)(매년)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 안전교육(16시간/2년)과 작성자 전문교육(16시간) 이수
- 실적보고(법 §49, 시행규칙 §53) → 화학물질관리협회(매년)

■ 화학물질 사용자

공통사항	(가) 화학물질 통계조사(법 §10) → 관할 환경청(통계청 시스템에 등록), 매2년 (나) 화학사고시 즉시(15분 이내) 신고(법 §43) → 관할 환경청 및 119 등 (다)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법 §50)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① 40개 업종(415종 취급) 대기·수질관련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법 §11) → 관할 환경청(화학물질안전원 조사시스템 등록)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 환경부('19.11월 시행)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법 §13)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추가 준수(법 §40) ③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보관·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법 §16) ④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법 §28) → 관할 환경청 - 기술인력 선임(법 §28, 10인 미만 제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32)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시 도급신고(법 §31)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법 §33) ※ 지역별 사용량별 면제규정 참조(시행규칙 §31, 영업허가 면제규정 등) ⑤ 취급시설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제조자"의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주요 사항" 참조 ⑥ 실적보고(법 §49, 시행규칙 §53) → 화학물질관리협회(매년)

■ 화학물질 보관·저장자

공통사항	(가) 화학물질 통계조사(법 §10) → 관할 환경청(통계청 시스템에 등록), 매2년 (나) 화학사고시 즉시(15분 이내) 신고(법 §43) → 관할 환경청 및 119 등 (다)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법 §50)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① 40개 업종(415종 취급) 대기·수질관련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법 §11) → 관할 환경청(화학물질안전원 조사시스템 등록)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 환경부('19.11월 시행)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법 §13)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추가 준수(법 §40) ③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보관·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법 §16) ④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법 §28) → 관할 환경청 - 기술인력 선임(법 §28),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32)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시 도급신고(법 §31)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법 §33) ⑤ 취급시설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제조자”의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주요 사항” 참조 ⑥ 실적보고(법 §49, 시행규칙 §53) → 화학물질관리협회(매년)

■ 화학물질 운반자

공통사항	(가) 화학사고시 즉시(15분 이내) 신고(법 §43) → 관할 환경청 및 119 등 (나)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법 §50)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① 40개 업종(415종 취급) 대기·수질관련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법 §11) → 관할 환경청(화학물질안전원 조사시스템 등록)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 환경부('19.11월 시행)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법 §13)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추가 준수(법 §40) ③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법 §15) → 관할 환경청(시스템 등록) ④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운반차량에 표시(법 §16) ⑤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시설검사 및 안전진단(법 §24) → 검사기관 - 취급시설 등의 점검(법 §26) → 사업장 자체(주1회) 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법 §28) → 관할 환경청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32)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법 §33, 8시간/2년) ※ 1회 운반량 1톤 이하인 경우 영업허가 면제(시행규칙 §31) ⑦ 실적보고(법 §49, 시행규칙 §53) → 화학물질관리협회(매년)

■ 화학물질 판매자

공통사항	(가) 화학사고시 즉시(15분 이내) 신고(법 §43) → 관할 환경청 및 119 등 (나)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법 §50)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법 §13)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추가 준수(법 §40) ② 진열·보관하려는 경우 진열·보관계획서 작성·제출(법 §15) → 관할 환경청 - 일정량 이하인 경우 진열·보관계획서 작성 면제 - 보관시설 구비 ④ 금지물질 판매금지, 다만, 시약의 경우에만 취급허가 후 판매 가능(법 §18) → 관할 환경청 ③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에 표시(법 §16) 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법 §28) → 관할 환경청 - 기술인력 선임(법 §28),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32)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및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술인력 선임의무 면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법 §33) ⑥ 통신판매하려는 경우 본인인증 체계 구축(법 §28의2) ⑦ 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 구매자에게 용도제한 및 취급기준 준수 의무 고지(법 §29의2) - 시약판매업 신고(법 §29의3) → 관할 환경청 ⑧ 실적보고(법 §49, 시행규칙 §53) → 화학물질관리협회(매년) ※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 취급시설 관리에 관한 책무 및 배출량조사 이행 → “유해화학물질 제조자”의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주요 사항” 및 “배출량조사” 참조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유예기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운영 중인 자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유예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7.5.30, 28종 추가)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2019년 6월 30일	2018년 1월 1일 당시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 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의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 그 밖에도 새로이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지정된 날 이전부터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고시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작성·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공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구분	세부내용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http://www.safechem.or.k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 한국가스안전공사 (http://cyber.kgs.or.kr)
검사시기	①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② (정기검사) 영업자는 매년, 비영업자는 2년마다 ③ (수시검사)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경청에서 대상으로 통지한 경우 ④ (안전진단) 장외결과 고위험도(매 4년), 중위험도(매 8년), 저위험도(매 12년)
검사방법 ⁽¹⁾	검사 신청 시 사전서면검사 자료 제출 후 현장확인검사 실시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검사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한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유예기간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규칙 별표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

■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허가기관	관할구역	연락처
장외	화학물질안전원	전국	042-605-7735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전국	042-605-7050
영업 허가	한강유역환경청	서울, 경기(시흥·안산 제외)	031-790-2854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 경남(하동·남해 제외)	055-211-1664~1667, 1659
	금강유역환경청	대전, 세종, 충북(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제외), 충남	042-865-0792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 전남(여수·순천·광양 제외), 제주	062-410-5261~2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충북(충주·제천·괴산·음성·단양)	033-760-6447
	대구지방환경청	대구, 경북(영천·경산·경주·고령·청도·포항·청송·영덕·영양·울진·봉화·울릉)	053-230-6591~3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군산·익산 제외)	063-238-8943
	시흥합동방재센터	인천, 경기(시흥·안산)	031-470-2416
	울산합동방재센터	울산, 양산	052-228-5805
	서산합동방재센터	충남(아산·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보령)	041-661-5801
	여수합동방재센터	전남(여수·순천·광양), 경남(하동·남해)	061-690-1601, 1623, 1625
	구미합동방재센터	경북(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문경·군위·의성·성주·칠곡·예천)	054-459-1170
	익산합동방재센터	전북(군산·익산)	063-839-5215
수입 신고 (허가)	한강유역환경청	서울, 경기, 인천	031-790-2835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 경남(하동·남해 제외)	055-211-1666
	금강유역환경청	대전, 세종, 충북(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제외), 충남	042-865-0791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 전남, 제주, 경남(하동·남해)	062-410-5262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충북(충주·제천·괴산·음성·단양)	033-760-6447
	대구지방환경청	대구, 경북	053-230-6592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	063-238-8935
시설 검사	한국환경공단	전국	032-590-4991, 499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052-703-0461~2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국	043-750-1337, 1339 043-750-1375, 1378
안전교육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국	02-3019-6603~7